



# 2011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 일시 | 2011. 5. 18.(수)  
| 장소 | 김해도서관 시청각실

 김해도서관  
[www.gimhaelib.go.kr](http://www.gimhaelib.go.kr)

# GIMHAE PUBLIC LIBRARY





# 2011 다문화교육 관계자연수

| 일시 | 2011. 5. 18.(수)  
| 장소 | 김해도서관 시청각실

 **김해도서관**  
www.gimhaelib.go.kr





## 2011.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일정표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3:00 ~ 13:20	20분	등 록	
13:20 ~ 13:25	5분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우 영 수 (평생학습진흥담당)
13:25 ~ 13:30	5분	인사말씀	김 광 현 (김해도서관장)
13:30 ~ 13:40	10분	다문화교육 동영상 「오펠리아의 2인 3각」	인천광역시 교육청제작
13:40 ~ 15:20	100분	특강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과제」	오 성 배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5:20 ~ 15:30	10분	휴 식	
15:30 ~ 16:20	50분	사례발표 1 「이주민 인권과 함께 하는 길」	이 영 화 (양산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16:20 ~ 17:10	50분	사례발표 2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꿈 : 나의 한국 생활 발자취」	김 령 (결혼이주여성)
17:10 ~ 17:20	10분	질의 및 답변	
17:20 ~ 17:30	10분	폐회	





## ●●● 목 차

### ■ 특강

- |                       |   |
|-----------------------|---|
|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과제  | 3 |
| 오 성 배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

### ■ 사례발표 1

- |                       |    |
|-----------------------|----|
| 이주민 인권과 함께 하는 길       | 19 |
| 이 영 화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

### ■ 사례발표 2

- |                             |    |
|-----------------------------|----|
|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꿈 : 나의 한국 생활 발자취 | 33 |
| 김 령 (결혼이주여성)                |    |

### ■ 부록

- |                            |    |
|----------------------------|----|
| 다문화가족지원법(2011. 4. 4. 일부개정) | 43 |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연락처          | 48 |
| 20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53 |



## ➔ 특강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과제

오 성 배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ohsb@dau.ac.kr





#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과제

오 성 배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I. 서론

한국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그 수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로 증가한 상태이다.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계 주민은 1,139,283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2008년도 대비 27.8%가 증가한 수치이며, 2006년 536,00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의 외국계 주민이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는 181,671명이며, 외국계 주민 자녀는 121,935명이다. 외국계주민 자녀는 2009년 대비 14,246명(13.2%) 증가한 것으로 미취학아동(만6세 이하)은 75,776명, 초등학생(만7세 이상~12세 이하)은 30,587명으로, 초등학생 이하가 87.2%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 자녀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그 수가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난민 가정, 국제결혼 재혼가정 등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유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새롭게 유입된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기존 한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그들의 2세들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등에 대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교육 실태가 열악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있다(오성배, 2005; 김정원, 2006; 조혜영 외, 2008; 이재분 외, 2009 등). 그들은 대체적으로 대인관계가 매우

소극적이며 자신들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학교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학업능력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다문화 사회에서 새로운 소외계층이 형성될 수 있으며, 사회양극화의 또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의 누적 때문에 더 큰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유입되는 구성원과 그들 자녀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교육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 글을 통하여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 II. 다문화 가정 자녀의 증가와 다양화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 국적은 대부분 한국이고, 어머니도 결혼 후 2년이 경과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재혼가정의 동반 자녀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수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sup>1)</sup>’ 신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국제결혼 증감 추이와 법무부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입의 추이, 교육과학기술부 재학생 자료, 행정안전부의 외국 주민실태 조사 자료 등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 가능하게 한다.

우선, 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34,338명으로 2005년도의 6,121명에 비하여 불과 5년 사이

1) ‘불법체류자’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단지 비자의 기한이 지났을 뿐이고, 한국의 3D 업종의 주축으로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자원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불법’이라는 가혹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초과체류자’ 또는 ‘미등록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이나 자녀의 교육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특히, ‘불법’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그 자녀의 교육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과 그들이 잠재적인 문제아로 낙인찍힐 우려도 존재하기에 좀 더 신중한 용어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에 5.6배가 증가한 수치이다(<표 1> 참조).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23,602명, 중학교에 4,814명, 고등학교에 1,624명이 재학하고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에 비하여 중학교, 초등학교로 학교 급이 내려갈수록 그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학교에 재학할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수가 많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미취학 연령 자녀의 수를 토대로 추산하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 가운데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비중이 2014년에 초등학교에서는 1.01%(2008년 0.44%), 중학교에서는 0.44%(2008년 0.08%), 고등학교에서는 0.71%(2008년 0.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오성배 외, 2008).

<표 1> 초·중·고 재학 국제결혼가정자녀 현황

(단위 : 명)

연도	초	중	고	계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924	279	7,998
2007	11,444	1,588	413	13,445
2008	15,804	2,205	760	18,769
2009	20,632	2,987	1,126	24,745
2010	23,602	4,814	1,624	34,338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6-2010).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국제결혼 가운데 재혼가정의 비율도 낮지 않다. 통계청의 자료(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에 따르면, 2001년도 이후 전체 국제결혼 가운데 한국인 남성이 재혼인 경우가 매년 꾸준히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이 재혼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다문화 가정 가운데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비중은 4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어머니를 뒤따라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이주 자녀(이른바 ‘동반입국 또는 중도입국 자녀’<sup>2)</sup>)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에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이주 자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통계는 산출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몇 가지의 자료를 근거로 국제결혼 재혼가정 이주 자녀의 수를 추산하여 보면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하기 이전에 출신국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추후에 입국시켰다 하여 ‘중간입국 자녀’, ‘중도입국 자녀’, ‘동반입국 자녀’ 등으로 칭하기도 한다(이재분 외,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0).

5,600 ~ 7,500 여 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자세한 내용은 오성배(2010) 참조하기 바람). 그리고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1 ~ 2009년 외국인 양자 입양 건수는 총 9,222명에 이른다(재인용, 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조사로 확인된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 4,205명(행정안전부, 2009)에 비하여 국제결혼 재혼가정 이주 자녀의 숫자가 많은 상황으로, 이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추정 가능하게 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수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는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정착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모국에 있던 자녀를 불러들이는 경우와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 간의 혼인(또는 동거)을 통하여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브로커를 통하여 입국하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후자의 경우 별도의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오성배, 2009). 다만, 공교육 기관에 재학중인 자녀의 수를 통하여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표 1>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학생 수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수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에 비하여 학교급이 내려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표 2> 참조). 이러한 사실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초·중·고에 재학할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재학생 수가 많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표 2> 초·중·고 재학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 현황

(단위 : 명)

연도	초	중	고	계
2009	834	307	129	1,270
2010	1,099	446	203	2,058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0).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이상에서 열거한 대상 외에 난민가정의 자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2001년 최초로 난민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2009년 한 해 동안에는 모두 324명의 신규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74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이와 같이, 난민신청 가정과 난민인정 가정의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난민 신청자 가운데 17세 미만의 청소년이 105명으로(2008년에는 81명) 전년에 비해 20명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이러한 증가 추이는 다문화 가정의 새로운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난민 가정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과 별도의 지원(장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요컨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 수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으로 한정되었던 다문화 가정의 유형이 점차 다양화되고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Ⅲ.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

다문화 사회에서는 인종·민족 등의 차이와 차별로 인하여 새로운 소외계층이 형성될 수 있으며, 사회양극화의 또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새로운 소수 집단(minority group)의 2세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이러한 소외현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격차의 누적' 때문에 더 큰 사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유입되는 구성원과 그 자녀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교육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다문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Banks(2002)는 다문화 교육을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들이 교육기관에서 평등한 성취경험을 갖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며,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교육이 아닌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교육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민주시민의식을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이며, 소수집단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ennett(2006)은 다문화 교육의 핵심적 가치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과 인정,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그것이다. 한

국 상황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이해하게 하고, 소수 집단을 배려하여 다인종 다문화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오성배, 2006).

아직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기 이전 단계인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새롭게 유입된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 적응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도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주류집단의 의식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등에 대한 연구들은 그들의 교육 실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새롭게 유입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 적응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도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부분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의 적응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하여 가사와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윤형숙, 2004; 설동훈 외, 2005 등). 그 자녀들도 상당수가 어머니의 영향으로 성장과정에서 언어발달과 정체성 형성 등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며, 학교교육에 부적응하는 등 교육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오성배, 2005; 오성배 2006; 조혜영 외, 2008; 이재분 외, 2008; 오성배·황석규, 2010 등).

공교육의 진입과정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는 발생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가정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게 공교육은 더욱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접근 과정에서 미취학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오성배, 2006; 오성배 · 황석규, 2010). 이러한 상황은 공교육의 출발점에서부터 교육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공교육에 진입한 이후에도 학습과 대인관계의 소극적인 태도, 언어 능력의 저하, 집단 따돌림의 문제 등은 이들의 성장과정에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학습능력을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기초 학력이 다른 아동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장 이해 능력, 독후감, 받아쓰기, 맞춤법 등의 능력은 동료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과목의 이해도와 비교하여도 문장 쓰거나 이해 능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오성배, 2006; 이재분 외, 2009 등). 결과적으로 교육 기회 배분의 격차는 성취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었다. 성취의 격차는 나아가 학력(學歷)의 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은 사회적 지위의 격차로 연결되어 새로운 소외계층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선의 가능성도 확인된다. 개선 방안과 관련된 연구들을 들여다보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참여하거나 지속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언어와 학습에 대한 적응이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중(twice)의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조수진 외, 2008; 조혜영 외, 2008; 이민경·김경근, 2009; 이재분 외, 2009).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효율적인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몰릴 위기에서 저임금 ‘3D’ 업종에 투입되어 체계적인 언어와 문화적응의 기회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석원정, 2002).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도 그들의 부모와 동일하게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언어와 문화적응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김정원, 2006; 이민경·김경근, 2009; 오성배, 2009). 한국 사회는 인도적 차원, 사회 평화적 차원, 경제 발전의 차원 등에서 그들에게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 살기위한 최소한의 인간적 욕구실현을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출생에 따라오는 우연한 결과(accidents of birth)로 국내에 유입된 것이고, 국내의 여느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출발점이 뒤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補償)적 배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들도 사회의 엄연한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지니고 있다. 두 번째로, 사회 평화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사회가 평화적으로 존속하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 동질성이 충분히 유지되어야 한다. 교육은 중요한 사회화 과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예절과 도덕, 규범을 준수하면서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또는 머무르기를) 기대한다면 교육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리고 성인기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정착할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역설적이게도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외국 이주노동자들은 과거 단순노무직을 넘어서 이른바 ‘3D 업종’의 숙련공으로서 국

내 중소기업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09. 1. 17일자 기사 참조). 이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련(經團連)이 2007년, 2008년에 잇달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국내 수요의 축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주(定住)의 필요성과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제언한 것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毎日新聞 2008. 10. 13일자 기사 참조). 이 외에도 국제전문가 또는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국가 사이의 가교(架橋)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오성배, 2009).

다문화 관련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의 필요성과 별개로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주류집단의 수용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김이선 외(2007)의 연구는 한국의 성인들은 외국인을 동료나 친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비교하여 혈연이나 가족관계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상당히 폐쇄적이고, 저연령 고학력층은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심은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경숙 외(200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과 교사, 학부모의 다문화 관련 의식을 조사하였는데, 김이선 외(2007)의 연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호하는 외국인은 백인 계통이 주류인 선진국 국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새롭게 이주한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담하거나 차별적 배려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 주류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사회적응과정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체계적으로 안착되어 있지 못하고,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 수용태도 또한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회적 지위의 격차로 연결되어 새로운 소외계층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 교육이 소홀히 진행된다면 새로운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농어촌 지역의 국제결혼 비중이 4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시골 지역의 교육기회 불평등 상황(오성배, 2006b)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뛰어난 다문화 가정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

면(설동훈 외, 2005) 이중고 삼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 변화를 위한 교육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VI. 결론과 제언

현재의 한국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법령도 제정·개정되고 있으며 다문화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관련 예산과 조직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 교육 정책은 양적 질적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우선 다문화 교육 정책의 철학과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리고 철학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다문화 교육 정책 관련 시스템의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의 유형에 따른 대상별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 정책도 여러 한계점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이에 대한 전문가 또는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과 상관없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기왕 다문화 사회로 변모한다면, 대체적으로 평화로운 상생의 다문화 사회를 지향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조짐은 그렇지 못 할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2007년 8월 유엔 인종차별위원회 회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의 저변에는 여전히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의 신념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체감하는 지원의 질과 양도 긍정적이지 못하다(이재분, 외, 2009; 박성혁, 2007 등). 이러한 상황은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의 누적’과 사회의 냉대로 인하여 가까운 미래에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교육’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적응과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바란다면 더욱 그러하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 수용 태도를 개선하는 과정도 ‘교육’을 통하여 가능하기에 그렇다. 다문화 사회를 일찍 맞이한 외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사례-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한국 사회에서도 다문화 교육 정책을 연착륙시켜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교육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는 다문화 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교육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일관된 정책의 철학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문화 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구체화 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벌이고, 그 과정에서 모순과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연구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문화’라는 용어의 논란에서부터 한국 사회의 특성에 근거한 다문화 교육의 철학적 논의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이면서도 진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주도하고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수립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기구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성격의 비상설 기구에서 벗어나 상설 기구에서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의 방향을 조정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정책 책임자, 입안자와 실무자 등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정의 최고책임자에서부터 일선 교사와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인식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의 변화와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추진 노정(로드맵), 부처별 특성에 따른 정책 추진의 적용 등에 대한 인식 공유와 더불어 진행 단계별 변화의 실제와 효과에 대한 논리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의 논리적 구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제·개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 컨트롤 타워가 적극 개입하여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교육 정책의 대상별 특성을 감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소수집단(minority group)은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다문화 교육 정책의 상당 부분은 국제 결혼 가정의 이주 여성과 그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만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치우쳐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과 그 자녀와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자녀, 난민 가정과 그 자녀 등 대상의 특성이 각기 다른 집단을 '단일문화' 집단으로 묶어서 그들의 다양성을 외면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기왕 다문화 사회임을 인정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세밀한 지원 정책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유형별 인구의 수도 각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특성에 근거한 '찾아가는 교육복지',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의 설립, 다문화 특별(디딤돌)학급의 확대, 다문화 대안(디딤돌)학교의 설립 지원,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 입학 기회 확대, 소수집단 외국인 학교의 설립 지원 등의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단일민족이라는 폐쇄적 자궁과 비백인계통의 혼혈인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면, 불안한 동거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특히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도래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의 평화적 상생 의식의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넘어서 정규 초·중·고등학교의 재량활동과 특기적성 교육 등을 통하여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단순체험위주의 외국 문화를 경험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가급적 낮은 연령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편견을 해소하는 데 더욱 긍정적일 수 있다.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변모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인종 다문화 시대의 근간인 청소년들이 평화적으로 다문화를 영위하고 공존하며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현명하게 상생하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일방적 시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며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 이해와 평화,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정책과 제도에 스며들 때 보다 자연스럽게 다문화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더불어 평화와 상생의 공동체 형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06-2010).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08).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증장기 계획.
- 국가인권위원회(2010). 보도자료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도 중등과정 학습권 보장돼야” .  
2010. 1. 25.
- 김선미(2009). “이주·다문화 실태와 지원 사업 분석: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  
시민사회와 NGO, 7(2), 189-228.
- 김이선·황정미·이진영(2007).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원(2006). “국내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교교육 실태 분석” .  
교육사회학연구, 16(3), 95-129.
- 박성혁(2007).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 정책 추진현황, 과제 및 성과분석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박세훈·이영아·김은란·정소양(2009).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석원정(2002).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 교육비평, 10, 170-182.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양계민·정진경(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 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0). 여성가족백서.
- 오경석(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 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오경석 외 저. 한울아카데미.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 한국교육,  
32(3), 61-83.
- 오성배(2006a). “한국 사회의 소수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 (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오성배(2006b). 도시와 시골의 학교교육. 한국학술정보(주).
- 오성배(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 탐색” .  
한국청소년연구, 20(3), 305-334.

- 오성배(2010). 다문화 교육 정책의 과제와 방향 탐색. *교육사상연구*, 24(2), 149-179.
- 오성배·강태중·이기범(2008).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증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오성배·황석규(2010).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 윤형숙(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최협, 김성국, 정근식, 유명기 엮음. 한울아카데미.
- 이민경·김경근(2009). “외국인 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전략”. *교육사회학연구*, 19(3), 107-132.
- 이재분·강순원·김혜원(2008).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분·김혜원·오성배(2009). 학교에서의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실태 및 요구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전경숙·정기선·이지혜(2007). 다문화 교육 정책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 조수진·윤희원·진대연(2008).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 *이중언어학*, 37, 235-264.
- 조혜영·서덕희·권순희(2008).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8(2), 105-134.
- 천선영(2004). “‘다문화 사회’ 담론의 한계와 역설”. *한독사회과학논총*, 14(2), 363-380.
- 한승준·오승은·정준호·최무현(2009).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II): 아시아국가의 다문화 사회 형성과정과 정책추진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 <http://www.immigration.go.kr>. 통계자료실.
- 통계청(각년도). 인구통계연보(혼인, 이혼편). [www.kosis.kr](http://www.kosis.kr).
- 행정안전부(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 행정안전부(2010). 2010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결과.
- 파이낸셜뉴스 2009. 1. 17일자 23면 기사 :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닌가  
 毎日新聞 2008. 10. 13일자 2면 기사 : 移民受け入れ提言
- Banks, J. A.(2002). *An Instr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 Bennett, C. I. (2006).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USA. Person Education Inc.



# ➔ 사례 발표 1

이주민 인권과 함께 하는 길  
이 영 화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yfwh00@hanmail.net





# 이주민 인권과 함께 하는 길

이 영 화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I. 한국 사회 이주의 역사

80년의 급격한 경제 성장의 결과,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이 세계로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을 보내던 송출국(독일, 중동, 일본)에서 아시아 지역의 이주노동을 받아들이는 송입국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이었다. 그들은 90년대 초반 한국의 기업들이 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아시아 현지공장의 노동자를 한국기업에 데려와 기술연수를 시킨다는 목적이었다. 주로 규모가 있는 대기업이며 초기에서는 기술연수로 6개월씩 기간을 연장하여 기술교육을 하다가 연수기간이 2년까지 연장되면서 편법적인 저임금을 노린 외국인노동력 도입의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1994년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시행되면서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도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학생신분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외국인 연수생들은 실제 기술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직에서 일하고 저임금에 위협하고 장시간 힘든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연수생이라는 학생신분으로 노동법의 최소한의 보호조차 되지 않아 인권적인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새롭게 받아들여지면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로 노동자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2007년부터는 산업연수제도는 전면 폐지되었다.

80년대 말부터 진행된 한국기업의 세계진출은 해외기업에서 일하게 된 한국인 노동자와 현지인사이의 국제결혼의 기회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국제결혼이 급속히 증

가하였다. 국제결혼을 떠올리면 결혼이민 여성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제결혼의 10%(행정안전부 2009년 통계)는 이주남성과 한국여성의 결혼이며 이는 이주노동자의 한국체류기간이 길어지고 그 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다. 90년 초부터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도입은 한국 사회가 이민사회로 나아갈 것을 예고했고 이주노동의 역사와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의미 있는 관련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려 움직여 갔고 이에 따라 노동력도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움직여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주는 하나의 큰 흐름이 되었다.

## II.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의 증가

국제이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주의 여성화이며 그 추세는 한국 사회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의 국내적 요인은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결혼적령기의 성비불균형과 여성의 결혼관의 변화로 독신여성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수준이 낮고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가진 남성계층이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기 어려워지자 국제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90년대 중반부터 농촌의 공동화를 막고자 농촌총각의 아내를 국내에서 찾지 못하게 되자 다수의 중국동포여성이 한국에 유입되는 결혼소개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일교가 주선한 국제결혼은 1996년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으로 명칭을 바뀌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정의 세계화 대중화를 외치며 종교적 주선으로 국내 남성과 결혼한 일본, 필리핀, 태국여성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었다. 2000년 결혼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여성이 95명에서 2004년에 2,464명으로 25배 이상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국제결혼 알선업체의 성업에 따른 결과이다.

가부장적 문화를 가진 일본, 대만, 한국은 소개업을 통하여 들어온 결혼이민 여성의 양상이 비슷한 경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여성의 급속한 증가는 이미 대만 남성과 결혼을 주선하던 베트남 현지 여성 국제결혼알선 구조가 그대로 한국결혼소개업체와 결합되면서 가히 폭발적 증가를 불러온 것이다.

### Ⅲ. 다문화란 무엇이며 이주민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04년의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주민에 관한 한국 사회 관심이 집중되었고 2005년부터는 그 이전까지 시민사회단체가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지원하던 이주민 지원 사업을 넘어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시작되었다. 다문화는 새로운 한국 사회의 트렌드가 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에서 다문화 축제, 다문화가정, 다문화 가족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다문화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나 고민은 부족한 채 다문화 가족이라 불리는 국제결혼 가족의 한국화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회는 언어로는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실제의 통합교육의 내용은 한국 사회로의 동화이며 다문화적 담론의 개념 정리도 안 된 채 정부의 각 부처별로 서로 다문화 가족 지원에 주도권을 잡으려 경쟁적으로 다문화 사업을 하는 해프닝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주민의 출신국에서는 박제화 되거나 민속촌에서나 볼 수 있는 아시아 문화를 끌어 모으고 다문화의 이해라고 하며 이민자들도 조차 모르는 자국의 전통문화를 배우며 다문화의 이해교육이라 진행되는 모습은 이주여성에게 강요되는 다도체험 교육 프로그램과 거울처럼 닮았다. 문화가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이주민들의 출신국의 사회 구조와 사회의 삶의 방식, 다양한 이주의 원인과 각자의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고 서로 문화를 배워나가는 것이 소수문화를 차별하지 않는 진정한 사회통합이라 생각한다.

언론에서 보도된 결혼이주 여성은 그들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고 그나마 극단적인 차별로 힘들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각종 적응프로그램 참여해 복지의 수혜자로 너무 고마워하거나 이국적인 외모에 성적으로 매력을 발산하는 미녀로서의 모습만을 보여준다. 언론의 보도를 통한 재현과 타자화는 우리 의식 속에 뿌리내린 또 다른 차별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다문화 사회의 근본적 원인규명과 심도 깊은 고민보다 관주도의 교육프로그램도입과 언어, 문화 동화 정책을 지원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류 한국 사회 유지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기사 속에 내포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재현에서 배제된 것은 이주여성의 목소리와 시각이며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 규정과 말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각기 다른 관심사와 존재하지만 출신국과 개인의 특성에 무관하게 한국 사회에 대비되는 동질적 집합의 타자로 제시된다(양정혜, 2007).

## IV.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인 지위 또는 권리를 긍정하는 개념으로 민족 또는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 고문 또는 타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법적·정치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기구들에 의해서 발현된다.

## V.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문제

### 1. 이주민이 느낀 차별 경험의 이야기

- ▶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태도 - 외국인 신분임을 알고 피해자로 신고하였는데 처리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 ▶ 택시기사 - 베트남사람인 것을 알고 베트남은 나쁘다고 이야기함. 미국을 이긴 나라인데
- ▶ 시댁 시누이 - 베트남 음식 냄새 싫어함. 한국인의 마늘, 생선비린내, 고기냄새 우리도 힘들어
- ▶ 일자리 면접 - 외국인이 왜? 컴퓨터 할 줄 아느냐?
- ▶ 백화점에서 가격을 물으면 대답 없이 비싸다고 함
- ▶ 산부인과에서 카드 결제 - 외국인도 카드가 있는가?
- ▶ 중국물건의 품질 방송 - 좋은 물건도 많은데 나쁜 물건 수입 누가 하는가? 중국기업의 사장은 외국기업
- ▶ 통역하러 회사가면 사장이 - 따로 만나자!
- ▶ 남편이 잘해 주나? - 처음 보는 사이 물어야할 질문인가?
- ▶ 시집 잘 왔네 - 나의 친정을 무시하는 말

## 2. 문화 그 다양함의 수용

### <질문내용>

▶ 한국에 와서 자신의 문화와 너무 달라 문화적으로 충돌한 경험

▷ 자신의 문화 중 한국 사회 소개하고 싶은 것

발표해 주신 분들은 경남의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에 참가한 이주여성들이며 이 여성들은 자신의 이주경험 나누기 내용입니다.

### ▶ A씨(필리핀, 13년)

저는 한국에 와서 힘든 것 많은데 문화적 충돌 중에 음식이 가장 힘이 들었다. 한국음식은 김치종류가 있는데 음식이 전체적으로 매웠다.

한국은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 필리핀에서는 한번 한 음식은 다시 먹지 않고 소나 돼지가 먹는다. 그러나 한국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시 먹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다.

우리 시어머니는 장남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남편은 둘째이다 우리가 집에 가면 잘해주시지만 어디 가면 큰 아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차별하신다.

▷ 필리핀 문화의 특성은 이혼하지 않아요. 필리핀 여성은 결혼하는 것은 내 목숨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 생각해요. 만약에 나가야 할 사항이라도 아이 데리고 가요 남편에게 맡기지 않아요.

### ▶ B씨 (인도네시아, 11년)

한국에 온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인사문화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밖에 나가면 어디 간다는 정도만 하면 되는데,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 인사해야 하고 한국은 잠깐 장에 가는 것도 인사하고 항상 허락받고 다녀와야 하고 꼭 보고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양말을 더운 나라라서 잘 안 신어요. 저희 같이 이주여성 친구들도 양말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한국 사람에게 지적받아요. 한국에 살면 양말 안 신었다고 많이 지적 받았어요.

▶ C씨 (몽골, 4년)

처음 와서 잘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시어머니나 남편이 잘해주느냐고 묻는 것이 불쾌했어요. 몽골에서는 손님이 집에 와도 안방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바로 안방에 들어가 너무 남의 개인생활을 보려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 D씨 (몽골, 7년)

한국은 신발은 벗는 문화라서 그것이 처음에 너무 힘이 들었다. 음식이 너무 힘이 들었다. 먹은 음식을 계속 먹고 다시 냉장고 넣었다가 다시 먹는 것이 몽골 문화와 다른 것 같다.

몽골에서는 옷을 좀 짧게 입을 수 있는데 여기는 몸을 다 덮는 옷을 입게 되었다. 나도 예쁜 옷을 입고 싶다. 몸이 많이 드러나고 짧은 옷을 입고 싶다.

▶ 몽골에는 초원도 도시도 다 있다 아파트도 문화생활도 다 하고 있다. 공부도 여자 남자 평등하게 하고 있다. 너무 한국인들이 아파트 그런 것도 몽골에 있다고 물어볼 때 화가 난다.

▶ E씨 (몽골, 4년)

제사 날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식사 하지 않고 한 상에서 남자가 먼저 식사한 후 여자가 식사 할 수 있다고 할 때 정말 안 좋았다. 일은 여자가 다하고 여자를 사람취급하지 않았다.

▶ F씨 (모로코, 8년)

음식이 가장 힘들었다. 돼지고기를 이슬람문화에서는 안 먹는다. 양고기, 닭고기는 많이 먹는다. 닭이니 양을 잡기 전에 기도해야만 그 고기 먹을 수 있는데 고모가 결혼한 후 2년 동안 계속 저보고 고기 왜 안 먹느냐고 먹으라고 해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 모로코에서 우리 집에 아는 분이 오면 꼭 3~4일 자고 가는데 우리 남편은 제 친구가 와서 자고 가면 좋겠다고 말하면 불편하다고 하여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모로코는 나의 주방의 냉장고를 열어 봐도 된다. 3개월간 친인척이 집에 와서 생활해도 된다. 한국친구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항상 한국어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한다. 이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합니다. 모로코 문화는 물어봐 주지 않아요.

▶ G씨 (일본, 15년)

맨 처음 한국에 밀반찬 많죠. 만드는 것도 그렇고 힘들었어요.

한국은 음식 먹고 과일 먹고 배가 부르는데 계속해서 더 먹으라고 권해서 너무 이상하고 힘들었어요. 또 손님이나 친척이 집 구경 오면 이 방 저 방 다 보고 서랍이나 냉장고 안까지 보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 심지어 아이들 친구도 마음대로 냉장고를 열 때 당황했다.

▶ 이번 지진에서 일본사람은 재난에 대한 방재훈련이 잘되었으며 위험에 대비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H씨 (일본, 12년)

명절 때 며느리만 일하는 것이 힘이 들었어요. 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자 우리 집 냉장고를 바로 열어 보시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뭐먹고 있는지 걱정하시고 하신 것이라 이해하게 되었지만 일본에서는 프라이버시 중요하니까 예의가 없게 보여서 당황스러웠다.

한국의 버스는 너무 난폭하고 빨리 달립니다. 너무 불친절 했어요

병원에서 증상이나 약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 일본나라는 지진 나서도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같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자기가 자기혼자가 아니고 하나가 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게 협조하면서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랑스러워요.

▶ I씨 (일본, 12년)

저는 다른 사람이 내 물건 손대는 것이 싫어요. 그런데 한국은 내 것도 네 것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에서 제가 음식이 맞지 않은 것 같아 택배로 집에 보내주셨는데 나에게 온 택배를 허락 없이 열어 보고 있었다. 저도 없는데 시댁가족이 짐을 마구 풀어서 하나하나 꺼내곤 내가 오자 우매보시를 보고서 먹어봐도 되냐면서 먹고 바로 '아이셔' 하면서 뺐었어요. 그것 하나가 우리한테는 너무 귀한 것이었는데

아이가 어릴 때 양말을 신기지 않고 시장에 데려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왜 양말 신기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아기가 싫다고 해서 벗겨 준 후였어요.

▶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산다. 공부만 운동만이라는 교육은 없어요. 양쪽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J씨 (중국, 11년)

한국은 시어머니들이 명절 때 힘들다고 명절증후군이라고 하면서 남자는 주방에 못 오게 해요. 남자는 요리할 줄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는 남자들이 주방일 더 많이 해요. 요리도 더 맛있고요.

저는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어요. 저는 중국에서는 짧은 치마나 많이 파인 옷을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밖에 입고 다니는 것을 즐기는데 시아버지나 남편이 처음에 놀랐지만 지금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입고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시아버지나 남편이 아무 말 안하냐고 막 걱정해요.

▶ K씨 (중국, 18년, 창신대 사회복지학과)

초등학생들이 마치는 시간이 중국보다 너무 빨라서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렵다. 중국은 아이들이 집에 오면 보통 5시 정도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학원에 보내는 것 같다. 나도 학원을 바로 보내게 되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 또 한국은 남녀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중국에서는 '3. 8. 부녀절'이 있는데 그 날은 모든 여성들이 집안 일을 하지 않고 극장에 가거나 선물을 받고 즐겁게 지내는데 한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만을 더 챙기는 것 같다. 한국도 '3. 8. 여성의 날'은 좀 제대로 챙겼으면 좋겠다. 중국에서는 자손들을 위해 제사를 3년 만에 한 번씩 지낸다.

그러나 한국은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 같다. 한국도 자손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제사를 3년만 지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 L씨 (중국, 12년)

설날이면 며느리들은 일만하고 아침 제사가 다 끝나고 가고 싶은 친정에 안 보내 주시려 합니다. 저하고 저희 형님은 시아버지의 눈치만 봐요. 제 형님은 10분 거리에 친정이 있어도 가지 못해 맘이 상하고, 저는 근처의 친척집에 오랜만에 가보고 싶은데 보내주지 않아서 뒤에서 말하며 속상해 합니다.

▶ 또 한국의 결혼문화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결혼식은 15분 정도에 마치고 바로 뷔페식당으로 가서 너무 짧게 끝내는데, 중국은 결혼식을 큰 식당을 빌려서 하고 공연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같이 축하하고 하루 종일 즐겁게 시간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 M씨 (베트남, 8년)

한국에 처음 와서 한국의 목욕탕 문화를 보고 놀랐다. 우리도 목욕하는 곳 있어도 옷 입고 한다. 그런데 이곳은 옷 다 벗고 한다. 시누이가 같이 가자고 해도 같이 가서 옷 벗지 못한다.

종교 때문에 맘이 많이 아팠다. 저는 불교인데 상당히 차별받았어요. 대접받지 못했다.

▶ 베트남에는 과일이 많다. 베트남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다. 베트남은 여자가 부지런하고 강하다.

▶ N씨 (베트남, 7년)

베트남에서 이주해 결혼했는데 한국에서 옛날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더니 시어머니가 왜 데리고 오냐면서 베트남 사람이어서 그런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해해주셨는데 옆집의 시어머니 친구들이 며느리가 베트남 남자 집에 데리고 왔다고 뭐라 하세요. 베트남에서는 관심 많이 있으면 우리 집에 와요. 관심 없으면 집에 안 와요. 그냥 관심인데 한국에는 그런 문화 없어요.

▶ O씨 (베트남, 4년)

한국음식이 제일 힘들고 밥상에서 식사하는 것이 불편해요. 베트남은 식탁에서 식사해요.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 것 같아요.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잘하는데. 베트남에서는 내가 가는 곳에는 내가 인사해야 한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인사한다. 베트남도 한국처럼 예의가 있었으며 좋겠다. 한국 사람은 좀 성격이 급하다. 특히 남자들이 급한 것 같다. 여자가 외출할 때 준비하면 급하게 빨리 하라고 한다.

### 3. 이주여성이 한국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한국 사람들이 다문화 가족이나 이주여성들에게 특별히 잘해주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것만 알려주면 좋겠다.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주면 좋겠다.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공부하고 싶을 때 모르면 알려주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너무 관심 가지거나 막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한다. 우리만 힘든 것 아니다. 한국여성, 결혼한 여자, 엄마 다 힘들다.

#### 4. 다문화 사회는 희망인가!

아이들이 국제사회 108개국 넘는 다양한 문화를 한국에서 체험 할 수 있고, 이제 정말 세계는 하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사회가 인간으로 권리 누릴 수 있게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되면 국제결혼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행복해 집니다.

그 개인이 행복하면 사회도 좋아진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 5.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 ① 해답은 그들에게 있음을 믿어요. : 이주민은 힘이 있습니다.
- ② 과도한 지원과 친절 안에 자리 잡은 다른 생각 : 차별과 서운함
- ③ 정확한 의사소통의 노력 우리부터 :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보고 의사 전달을 바로 합시다.
- ④ 그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다시 나누는 그날까지 : 왜 같이하려 하는가의 목표
- ⑤ 뒤집어 생각하기 : 어디까지 지원하여야 하나
- ⑥ 이주민은 사회의 거울, 거울을 통해본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한 깊은 고찰 :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의 인식의 수준, 뿌리 깊은 가부장제, 남녀 불평등





## ➔ 사례 발표 2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꿈 : 나의 한국 생활 발자취

김 령 (결혼이주여성)

manok4772@naver.com





#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꿈 : 나의 한국 생활 발자취

김 령  
(결혼이주여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김령입니다. 더 잘 살고 싶어서 29살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들어오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적응하는 과정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들어올 때 왜 힘들었냐 하면 한국 영사관에서 저를 통관시켜주지 않았습니니다. 한국에서 결혼식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만드는데 13개월이나 걸렸고 남편은 서류 때문에 중국을 5번이나 관광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남편은 제 고집이 센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남편이 무뚝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함께 겪으며 저희는 서로 같이 살게 된다면 힘들었던 만큼 오순도순 잘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좋은 시점에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했지만 서로 다른 문화 다른 배경에서 자란 두 사람은 서로 적응하느라 무지 괴로웠습니다. 언어 소통이 안 되고 생활 습관이 다르며 특히 중국과 한국의 남녀의 지위에 대한 의식이 달라 잦은 다툼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는 참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는 교재로만 배우면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8년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지만 오용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호칭을 정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친한 사이에 나이에 따라 존댓말과 반말하는 것이 종종 헷갈려서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학교는 학우들 사이에 서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로 정했습니다. 한 친한 선배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한참 나이 어린 선배에게 반말이나 존댓말로 말하는 것이 저에게는 모두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말 할 때 마다 고민이 됩니다. 한국인에게 물었는데 역시나 시원한 답이 없었습니다.

한국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힘듭니다. 상대방과 이야기 나눌 때 한국어는 주어를 빼고 말해도 의사소통에 아무런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예: (너)좋아해?] 하지만 중국인은 습관적으로 제2인칭(ni)를 사용합니다. [예: 너 좋아해?] 그래서 사전을 통해 제2인칭(ni)의 존칭은 ‘당신’이라고 확인하고 한 번은 시장에 가서 “당신, 이것 얼마예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아저씨라고 불러.”라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의 설명으로 ‘당신’이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시어머니가 시장 보러 가자고 저를 부르는데 저는 멍하니 어머니만 쳐다보면서 “어머님, 시장 보러 가려면 옷차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그냥 가도 돼.”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장 보러 가는 길에서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시장은 한 도시의 가장 큰 인물인데 보러 가려면 옷단장을 하고 조심스레 가야 하는데 왜 편한 복장을 입고 가는지.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비로소 그 시장이 마산시 시장이 아니라 장터 시장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외국어 배우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똑같은 소리음이라도 말하는 사람의 환경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그의 의도를 빨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선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언어 간의 표현 습관이 다른 경우입니다.

제가 식당에서 자원봉사 할 때의 일입니다. 점심 일을 마치고 주방에서 수저를 씻으며 손님이 몇 명 오셨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수저 수를 세었습니다. 다 세고 나서 사장님에게 큰 목소리로 ‘백공네(104) 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모두 배꼽을 잡고 웃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또 ‘백공네 개’라고 하며 함께 일하는 이모에게 왜 웃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넌 배꼽이 4개나 있니?” 라며 또 웃었습니다. 그제서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는 지 알았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숫자 사이에 있는 0을 읽지 않는데 중국에서는 0까지 다 읽기 때문에 생겨 난 에피소드입니다.

전 한국에 와서 제 스스로 철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을 때는 성격이 급한 탓에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미리 말의 내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판단이 틀린 경우가 많고 똑똑한 척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니까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국말의 특징은 중심어가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다 듣지 않으면 뜻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경상도의 말은 굉장히 빠르다 보니 경청하지 않으면 틀리기 십상입니다. 몇 년을 적응하려고 애쓴 끝에 지금은 성격도 침착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과는 문화 배경 차이로 인한 많은 다툼 끝에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서로 안 맞는다고 적지 않게 싸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가출이란 생각을 문득 떠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나는 행복하게 살려고 한국에 왔지, 아이와 남편을 버리고 가출하려고 온 것 아니다. 게다가 딱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막막했고 가출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진심은 문화 차이를 뚫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진심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진심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남편은 3명의 아이를 원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남편은 웃으면서 한 아이는 엄마 오른손을 붙잡고, 한 아이는 왼손을 붙잡고, 나머지 한 아이는 다리를 붙잡아야 엄마가 꿈쩍 못하지 않겠냐고 대답했습니다. 그 만큼 저를 못 믿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믿게 해야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남편에게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기로 했습니다. 책을 사들여 공부도 했고 남편이랑 자주 모임 장소에 참여하면서 한국말 틀린 경우 바로 고쳐달라고 남편과 남편 친구들에게 줄곧 부탁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자존심이 상할까봐 말을 자꾸 고쳐주는 남편을 꾸짖었지만 저는 항상 그 고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책에서 배울 수 없는 한국어를 굉장히 많이 익혔습니다.

그 다음엔 제 말투를 바꾸려고 결심했습니다. 잘난 공주 행세만 하면 안 통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가씨 시절과 가정주부 생활은 같을 수 없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여자가 대꾸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큰 싸움이 여러 번 벌어졌습니다. 사실 부부싸움은 사소한 말투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특히 술 많이 마시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긁어봐야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잘못 긁으면 오히려 서로 열만 받고 마음의 상처만 남깁니다. 그리고 남편의 음식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남편은 가장이자 가정의 기둥입니다. 남편이 건강해야 이 가정의 행복이 비로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남편도 저의 노력을 눈에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불화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자기 성격을 최대한 참는 편입니다. 언젠가 저의 남편이 “이 낯선 한국에 나 하나만 보고 왔는데 내가 잘 안 해주면 누가 잘 해주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좋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하면, 그건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우리 집 가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家和萬事成> 가정이 화목해야 사회생활도 잘 풀리고 삶의 원동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남편은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인정해주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줍니다. 한마디로 저를 믿습니다. 아이도 많이 낳자고 요구하지 않고 제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무작정 반대하는 것 아니라 제 생각을 귀담아 듣고 분석하면서 결정합니다. 덕분에 저는 경상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고 사회생활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법입니다. 행복한 열매는 서로 노력하고 부단히 경영해야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만 원하면 영원히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1.10. 5] [법률 제10534호, 2011.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시행일 : 2011.10.5] 제2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 2011.10.5] 제3조의2

-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 2011.10.5] 제3조의3

-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 2011.10.5] 제3조의4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개정 2010.1.18, 2011.4.4>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시행일 : 2011.10.5] 제4조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시행일 : 2011.10.5] 제5조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 2011.10.5] 제6조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4>

[시행일 : 2011.10.5] 제8조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4.4>

[제목개정 2011.4.4]

[시행일 : 2011.10.5] 제9조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1의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0.1.18>

[시행일 : 2011.10.5] 제12조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 2011.10.5] 제15조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0534호, 2011. 4.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연락처」

전국 150개 기관 : 일반지정(116)

**1. 일반지정기관 : 116개(거점-30, 일반-86)**

연번	거점운영기관명 / 일반운영기관	전 화	주 소
1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02-3475-232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0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661 신구대학 평생교육관 302호
	신명실업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277-15
	국제외국인센터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19-32 계명빌딩 402호
2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031-467-804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400-10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1동 465-2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476-134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31
3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02-2173-226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5가 14 노동사목회관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8-19
	인제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64(인당관)
4	동의대학교 부산다문화사회통합센터	051-890-11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
	부산시 연제구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55
	(사)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1가 1-10 부산데파트 426호
	(사)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442-11 중원빌딩 2층
5	울산대학교 울산광역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	052-274-3185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29 산학협동관 516호
	울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76-33
	울산푸른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498-2 울산푸른학교 2,3층
	울주 온산농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30-10

연번	거점운영기관명 / 일반운영기관	전 화	주 소
6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032-899-1525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30-3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동 193-1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김포시 870번지
	김포다문화가정지원센터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09-28 대신B/D 4층
	(사)경기글로벌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70-16 동부천전화국 4층
7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031-481-329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길 67(원곡동 991-1)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6-1 시화공단 3나 804호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49-1
8	계명대학교 다문화사회센터	053-580-889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번지
	동촌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964-8
	달성 옥포농협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2403-1
9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	053-810-3561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신포항 농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387-5
10	경북대학교 낙동강연구원	054-530-1991	경상북도 상주시 가장동 386 경북대 상주캠퍼스 산학협력관 306호
	안동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974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63-3
	산동농협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54- 1
11	목원대학교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 육센터	042-829-7288	대전광역시 서구 목원길 21
	대전광역시 동구청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85-26
	대덕종합사회복지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48-2
12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	041-660-1705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
	당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충청남도 당진군 수청리 979 신터미널
	화성농협 비봉지소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72-7
	홍성사회복지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웅천 농협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13-2
13	건양대학교 국제교육원	041-730-5135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19
	서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83-35
	논산시 상월면 주민자치센터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백일현로 1049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626
	연기다문화센터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17-4, 3층

연번	거점운영기관명 / 일반운영기관	전 화	주 소
14	(사)이주가족복지회 광주복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430-2963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37-5 용봉회관 2층
	그루터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941-14
	화순농협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20-2
	첨단종합사회복지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56-2
	옥과 농협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224-2
	장성 삼서농협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815
15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061-450-2950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무안로 560
	(변경)영암종합사회복지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525
	영산포 농협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189-2
	별교 농협		전라남도 보성군 별교읍 별교리 888-3
	완도 신지 농협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대평리 757-2
16	수원중앙복지재단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031-224-607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72-2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734 유엔아이센터 4층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111
	군포이주와 다문화센터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224-11
17	국경없는마을.광주지부 광주이주민센터	031-797-2688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33-32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87-1 남강빌딩 1층
	CLC 이주민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36 보광빌딩4층
	양평 양서농협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4리 559-45
18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031-544-061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59-3 우덕프라자 201호
	구리 다문화교육센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5-19 남양저축은행별관 2층
	일산 다문화교육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6 일산프라자 604호
	수동 농협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95-63
19	순천외국인한글학교	061-725-1905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509
	쌍봉 종합사회복지관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65
	주암면 복지회관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780
	여수다문화복지원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870-1

연번	거점운영기관명 / 일반운영기관	전 화	주 소	
20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033-250-8137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가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38
			동횡성 농협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1리 767
			홍천 서석 농협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214
21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	033-648-3019	강원도 강릉시 교1동 1785	
			속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234-2
22	마산대학 평생교육원	055-230-1125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용담리 100	
			거제 YWCA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290
			(사)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52-7
			창녕 농협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72-5
23	진주교육대학교 경남다문화사회연구소	055-740-1170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380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30-2 고성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600-1 한보2차상가 B-1
			(사)산청여성가족지원센터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50-6, 2층
			의령농협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 391-4
			24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817-12 여성회관 2층			
보은 농협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189			
25	세명대학교 한국학센터	043-649-1744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2가 117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454-1
			단양 소백농협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409
			단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청북도 단양군 별곡리 639-1 단양여성발전센터 2층
26	제주이주민센터	064-712-1141	제주시 노형동 727번지 은혜빌딩 6층	
			동제주 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409-2
			국제가정문화원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554-1 하나로마트 2층
27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64-762-0211	서귀포시 동홍동 353-1번지	
			동부 노인복지회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229-1
			성산농협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06-3

연번	거점운영기관명 / 일반운영기관	전 화	주 소
28	우석대학교 다문화센터	063-290-1036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로 333
		순창군청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315-4
		장계 농협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56-3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인보회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421-1, 진안성당내
		운봉 농협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231
		고산 농협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881
29	원광대학교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	063-850-6046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44-2
		정읍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448-8(주소 변경)
		선운산 농협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330
		군산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대학로 558 자연과학대 3호관 2층
30	(재)한국이민정책발 전재단:화상교육	02-2643-879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1동 122-19 정풍빌딩1층

## 「20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총 200개소)

(2011. 3월 3일 기준)

시 도 (센터수)	센터명	주 소	연락처	개소 년도	구분
서울 (23)	강 남 구	강남구 개포동 14-2	02-3414-3346	2011	위탁
	강 동 구	강동구 천호2동 358 천호2동주민센터 5층	02-473-4986	2010	위탁
	강 북 구	강북구 번2동 318 강북웰빙 스포츠센터 3층	02-945-7381	2010	위탁
	강 서 구	강서구 화곡동 1159-4 우장산주민센터 3층	02-2606-2037	2010	위탁
	관 약 구	관악구 숙고개길 13 1층	02-883-9383	2010	위탁
	광 진 구	광진구 광장동 472-1 광장종합사회복지관내 3층	02-458-0666	2010	위탁
	구 로 구	구로구 구로3동 1129-6	02-869-0317	2010	위탁
	금 천 구	금천구 시흥본동 841 시흥본동자치센터	02-803-7743	2010	위탁
	노 원 구	노원구 공릉동 519 가온빌딩 4층	02-979-3502	2010	위탁
	도 봉 구	도봉구 창동 303 구민회관 2층	02-995-6800	2011	위탁
	동대문구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 생활과학대학 223호	02-957-1073	2006	위탁
	동 작 구	동작구 사당2동 1136-1 3층	02-599-3260	2010	위탁
	마 포 구	마포구 합정동 388-19	02-3142-5027	2010	국비
	서대문구	서대문구 북가좌2동 333-5	02-375-7530	2010	위탁
	성 동 구	성동구 홍익동 373-1	02-3395-9445	2011	위탁
	성 북 구	성북구 보문동 5가 14 노동사목회관 5층	02-953-0468	2007	위탁
	송 파 구	송파구 마천동 127-1	02-403-3844	2010	위탁
	양 천 구	양천구 화곡로 4길 10 3층	02-2699-6900	2011	위탁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1동 동사무소 4층	02-846-5432	2010	위탁
	용 산 구	용산구 한남2동 728-2 용산여성문화회관 1층	02-797-9175	2010	위탁
	은 평 구	은평구 갈현동 468-2 성지빌딩 3층	02-376-3731	2010	위탁
	종 로 구	종로구 창신2동 596-2 동부여성문화센터 3층	02-764-3521	2010	위탁
	중 랑 구	중랑구 면목본동 62-2	02-435-4149	2010	위탁
부산 (8)	기 장 군	기장군 기장읍 기장중앙로 208 기장종합사회복지관	051-723-0419	2010	위탁
	남 구	남구 수영로 530 여성회관	051-610-2027	2006	직영
	동 래 구	동래구 사직동 594-8(사직종합사회복지관)	051-506-5757	2011	위탁
	부산진구	부산진구 전포동 653-14 2층	051-817-4313	2010	위탁

시 도 (센터수)	센터명	주 소	연락처	개소 년도	구분
	북 구	북구 효열로 218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층	051-330-3472	2010	위탁
	사 상 구	사상구 보수로 795번지 여성문화회관	051-320-8344	2007	직영
	사 하 구	사하구 신평동 262-24 임호빌딩 2층	051-205-8345	2009	위탁
	해운대구	해운대구 좌동 1458-2	051-702-8002	2010	위탁
대구 (7)	남 구	남구 대명2동 19-1 2층	053-475-2324	2006	위탁
	달 서 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 제2백은관 207-1호	053-580-6819	2007	위탁
	달 성 군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3-41 3층	053-637-4374	2009	위탁
	동 구	동구 동호동 358 대구카톨릭대학교 부설유치원 4층 402호	053-961-2203	2010	위탁
	북 구	북구 관음동 1383-15 3층	053-327-2994	2011	위탁
	서 구	서구 원대동 3가 1115-5	053-341-8312	2008	위탁
	수 성 구	수성구 두산동 보람길 30	053-764-4317	2010	위탁
인천 (8)	강 화 군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3-2(구보건소 3층)	032-933-0980	2007	위탁
	계 양 구	계양구 계산동 906-1 3층	032-552-1016	2008	위탁
	남 구	남구 주안5동 22-59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032-875-1577	2006	위탁
	남 동 구	남동구 만수5동 892-9 2층	032-467-3912	2010	위탁
	부 평 구	부평구 갈산동 375-1	032-511-1800	2010	위탁
	서 구	서구 석남동 325 서부여성회관	032-569-1540	2010	위탁
	연 수 구	연수구 청학동 527-24 4층	032-851-2740	2011	위탁
	중 구	중구 도원동 28-34	032-891-1094	2010	위탁
광주 (4)	광 산 구	광산구 송정동 802-4	062-954-8004	2009	위탁
	남 구	남구 월산동 926-2	062-351-9337	2011	위탁
	북 구	북구 신안동 237-5 용봉회관 2층	062-363-2963	2008	위탁
	서 구	서구 양3동 385-20	062-369-0003	2006	위탁
대전 (4)	동 구	동구 자양동 155-3(우송도서관 7층)	042-630-9945	2011	위탁
	중 구	중구 선화동 290-11	042-223-7959	2011	위탁
	유 성 구	유성구 관평동 767	042-252-9997	2006	위탁
	대 덕 구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74-4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관 3층	042-639-2664	2008	위탁
울산 (4)	남 구	남구 옥동 336-2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052-274-3185	2006	위탁
	동 구	동구 서부동 582-5 미포복지회관 5층	052-232-3357	2010	위탁
	울 주 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76-3	052-263-6881	2009	위탁
	중 구	중구 성남동 57-17 3층	052-248-6007	2011	위탁

시 도 (센터수)	센터명	주 소	연락처	개소 년도	구분
경기 (29)	가 평 군	가평군 가평읍 상교로 38 행정정보관 2층	070-7510-5876	2010	위탁
	고 양 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 로데오탑 202호	031-938-9801	2008	위탁
	광 명 시	광명시 한술길 22	02-2060-0453	2010	위탁
	광 주 시	광주시 송정동 115-4	031-798-7141	2010	위탁
	구 리 시	구리시 인창동 527-45	031-556-4139	2011	위탁
	군 포 시	군포시 청백리길 22	031-395-1811	2010	위탁
	김 포 시	김포시 사우동 262 여성회관 1층	031-980-5584	2010	직영
	남양주시	남양주시 지금동 159-7 남양주시청 제2청사 2층	031-590-8214	2007	위탁
	동두천시	동두천시 지행동 722-1	031-863-3802	2010	위탁
	부 천 시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509호	032-320-6391	2008	위탁
	성 남 시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661 신구대학 평생교육원 302호	031-740-1175	2008	위탁
	수 원 시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02-1 수원대리구청 1층	031-257-8504	2007	위탁
	시 흥 시	시흥시 정왕동 1823-2 상경빌딩 4층	031-319-7997	2010	위탁
	안 산 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2 하늘법조빌딩 3층	031-439-2209	2006	위탁
	안 성 시	안성시 봉남동 349-2 안성종합사회복지관	031-677-7191	2007	위탁
	안 양 시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1 동안문화관 3층	031-389-5705	2010	위탁
	양 주 시	양주시 남방동 2-22	031-848-5622	2010	위탁
	양 평 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00-3	031-775-5951	2011	위탁
	여 주 군	여주군 여주읍 흥문리 현대A상가 3층	031-886-0321	2010	위탁
	연 천 군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 33-15 읍민회관 내	031-835-1107	2011	위탁
	오 산 시	오산시 원동 374-5	031-372-1335	2010	위탁
	용 인 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86 처인구청 3층	031-323-7133	2008	위탁
	의 왕 시	의왕시 오전동 99-1	031-429-8931	2011	위탁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2동 564 경민빌딩 1층	031-878-7880	2008	위탁
	이 천 시	이천시 중리동 187 종합복지타운	031-631-2260	2010	위탁
	파 주 시	파주시 금촌동 782-49 (신흥대학 파주교육원)	031-949-9164	2010	위탁
	평 택 시	평택시 평성읍 남산리 59-7	031-650-2660	2009	위탁
	포 천 시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610	031-538-3269	2011	위탁
화 성 시	화성시 병점동 734 4층	031-267-8785	2010	위탁	
강원 (14)	강 릉 시	강릉시 교1동 1785	033-648-3019	2007	위탁
	동 해 시	동해시 천곡동 808-1 동해시청 제1별관 1층	033-535-8378	2010	위탁
	속 초 시	속초시 영랑동 234-2	033-638-3523	2008	위탁
	양 구 군	양구군 양구읍 상리 239-7 양구행복나눔센터	033-481-8663	2010	직영
	영 월 군	영월읍 영흥2리 950-5 KT 5층	033-372-4769	2010	위탁
	원 주 시	원주시 명륜2동 705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내	033-765-8135	2006	위탁

시 도 (센터수)	센터명	주 소	연락처	개소 년도	구분
	인 제 군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388 하늘내림센터 1층	033-462-3651	2009	위탁
	정 선 군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4-5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내	033-562-3458	2011	위탁
	철 원 군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710-4	033-452-7800	2010	위탁
	춘 천 시	춘천시 죽림동 189 브라운가 6동 6303호	033-251-8014	2007	위탁
	태 백 시	태백시 황지동 59-35 2층	033-554-4003	2011	위탁
	평 창 군	평창군 평창읍 하리 113-1 평창군문화복지센터 2층	033-330-2086	2009	직영
	홍 천 군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1-20	033-433-1925	2008	위탁
	횡 성 군	횡성군 횡성읍 어수로 46	033-344-3459	2008	위탁
충북 (11)	괴 산 군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75-2 여성회관 1층	043-832-1078	2009	위탁
	보 은 군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43-65 3층	043-544-5422	2008	위탁
	영 동 군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88-1	043-745-8489	2010	위탁
	옥 천 군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 다목적회관 2층	043-733-1915	2008	위탁
	음 성 군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817-12(여성회관 2층)	043-873-8731	2011	위탁
	제 천 시	제천시 교동 90-14	043-643-0050	2008	위탁
	증 평 군	증평군 장동리 785 구보건소 별관	043-835-3572	2011	직영
	진 천 군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570-1 생거진천종합복지관	043-537-5431	2009	위탁
	청 원 군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92-2 청원군보건소 2층	043-293-8887	2010	위탁
	청 주 시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7 정우빌딩 3층	043-223-5253	2006	위탁
	충 주 시	충주시 연수동 1454-1	043-856-2253	2008	위탁
충남 (15)	공 주 시	공주시 중동 321 3층	041-856-0883	2007	위탁
	금 산 군	금산군 금산읍 상리 24-2	041-750-3990	2007	위탁
	논 산 시	논산시 취암동 1048-7	041-735-5810	2011	위탁
	당 진 군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63-1 상가2층	041-358-3673	2011	위탁
	보 령 시	보령시 명천동 413	041-936-8506	2011	위탁
	부 여 군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92-1 여성문화회관 2층	041-835-2480	2008	직영
	서 산 시	서산시 동문동 207-11 5층	041-664-2710	2010	위탁
	서 천 군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83-35 3층	041-953-1911	2010	위탁
	아 산 시	아산시 온천동 94-6 4층	041-548-9779	2006	위탁
	연 기 군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9-1	041-862-9337	2011	위탁
	예 산 군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27	041-334-1368	2008	위탁
	천 안 시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1519 백석대학빌딩 11층	070-7733-8334	2010	위탁
	청 양 군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4-1	041-940-6641	2010	위탁
	태 안 군	태안읍 남문리 712-13	041-670-2396	2011	직영
	홍 성 군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홍성사회복지관내	041-634-7432	2009	위탁

시 도 (센터수)	센터명	주 소	연락처	개소 년도	구분
전북 (14)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33-5 1층	063-561-1366	2009	위탁
	군산시	군산시 수송동 축동 1길 88	063-443-0053	2010	위탁
	김제시	김제시 검산동 1031 지평선어울림센터 3층	063-545-8506	2007	위탁
	남원시	남원시 동충동 173-2	063-635-5474	2008	위탁
	무주군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28	063-322-1130	2011	위탁
	부안군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536-15	063-580-3941	2011	직영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638-6	063-653-8180	2009	위탁
	완주군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우석대학교 종합관 3층 5310호	063-290-1298	2008	위탁
	익산시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4층	063-850-6046	2006	위탁
	임실군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36-2 새마을금고 2층	063-642-1837	2010	위탁
	장수군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49-4	063-352-3362	2006	위탁
	전주시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9-9	063-243-0333	2008	위탁
	정읍시	정읍시 수성동 488-8	063-531-0309	2008	위탁
	진안군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85-8	063-433-4888	2011	위탁
전남 (20)	여수시	여수시 미평동 591-9 여성문화회관	061-690-7158	2006	직영
	순천시	순천시 덕월동 순천제일대학길 17 평생교육관 3층	061-742-1050	2007	위탁
	나주시	나주시 이창동 162-6 우리빌딩 4층	061-331-0709	2007	위탁
	광양시	광양시 중동 1318-2 광양시의회청사 4층	061-797-6832	2007	위탁
	담양군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116-1	061-380-3655	2010	위탁
	곡성군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31(곡성읍사무소 2층)	061-362-5411	2009	직영
	고흥군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832	061-832-5399	2008	위탁
	보성군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229-1 2층	061-852-2664	2011	위탁
	화순군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43 부영 3차상가 304호	061-375-1057	2009	위탁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61 장흥종합사회복지관 4층	061-864-4810	2008	위탁
	강진군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291-2	061-433-9004	2011	위탁
	해남군	해남군 해남읍 해리 159-5	061-534-0017	2008	위탁
	영암군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8-2 한마음회관 2층	061-463-2929	2006	위탁
	무안군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885-1	061-452-1813	2010	위탁
	함평군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1	061-324-5431	2009	위탁
	영광군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829-4 2층	061-353-7997	2007	위탁
장성군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388	061-393-5420	2008	위탁	
목포시	목포시 산정동 1044-726	061-278-4222	2011	위탁	
완도군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248-14	061-555-4100	2011	위탁	
진도군			2011	미정	

시 도 (센터수)	센터명	주 소	연락처	개소 년도	구분
경북 (20)	경 산 시	경산시 서상동 143-8 여성회관	053-816-4071	2008	위탁
	경 주 시	경주시 용강동 873-6 농어민회관 2층	054-743-0770	2008	직영
	구 미 시	구미시 형곡동 314-3	054-464-0545	2008	위탁
	김 천 시	김천시 대광동 1347-1	054-439-8279	2008	위탁
	문 경 시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산6 문경대학 내	054-554-5591	2007	위탁
	봉 화 군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85 결혼이주여성 전용쉼터 내	054-673-9023	2010	직영
	상 주 시	상주시 무양동 1-162	054-531-1341	2008	위탁
	성 주 군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61-1 성주군문화예술 회관 내	054-931-0537	2010	직영
	안 동 시	안동시 옥동 974 안동종합사회복지관	054-853-3111	2008	위탁
	영 덕 군	영덕분 영덕읍 화개리 608	054-730-6212	2011	직영
	영 양 군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58-6	054-683-5432	2011	위탁
	영 주 시	영주시 가흥1동 1385 영주가흥종합사회복지관	054-634-5431	2008	위탁
	영 천 시	영천시 화룡동 199-6 대천빌딩 2층	054-334-2882	2009	위탁
	예 천 군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64-12 2층	054-654-4321	2006	위탁
	울 진 군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63-3 울진종합사회복지관	054-789-5414	2009	직영
	의 성 군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02-1	054-832-5440	2009	위탁
	청 도 군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457	054-373-8131	2011	위탁
	청 송 군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16	054-872-4320	2011	위탁
	칠 곡 군	칠곡군 북삼읍 인평2리 366-2	054-975-0831	2011	위탁
	포 향 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구획 정리지구 4B 1L 여성문화회관	054-270-5556	2007	직영
경남 (17)	거 제 시	거제시 아주동 290 근로자복지회관 2층	055-682-4958	2008	위탁
	거 창 군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83	055-945-1365	2008	위탁
	고 성 군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30-2	055-673-1466	2010	직영
	김 해 시	김해시 부원동 623-2(구,보건소 2층)	055-329-6349	2006	위탁
	남 해 군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760	055-864-6965	2009	위탁
	밀 양 시	밀양시 내이동 1188-13	055-356-8875	2008	위탁
	사 천 시	사천시 동금동 405-6	055-834-1253	2010	위탁
	산 청 군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50-6	055-972-1018	2011	위탁
	양 산 시	양산시 남부동 95	055-382-0988	2008	위탁
	진 주 시	진주시 신안동 419-4	055-749-2325	2006	직영
	창원마산	마산합포구 중앙동 3가 4-190 마산YWCA	055-245-8746	2008	위탁

시 도 (센터수)	센터명	주 소	연락처	개소 년도	구분
	창 원 시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0-8 창원시여성회관 창원관 1층	055-225-3951	2007	직영
	통 영 시	통영시 무전동 464-1	055-640-7781	2011	위탁
	하 동 군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63-6	055-880-2314	2011	직영
	함 안 군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121-1 함안군새마을지회	055-583-5430	2009	위탁
	함 양 군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67-4	055-962-2013	2008	위탁
	합 천 군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055-930-4738	2010	직영
제주 (2)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귀동 303-12	064-762-1141	2010	위탁
	제 주 시	제주시 노형동 727 은혜빌딩 6층	064-712-1140	2006	위탁











---

## 2011.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

발행일 : 2011년 5월 18일

발 행 : 김해도서관

(621-040)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72

---



TEL : 055-320-5584~7

FAX : 055-320-5588

<http://www.gimhaelib.go.kr>

---

※ 본 자료집은 비매품임

---